

답 변 서

안녕하세요.

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21. 가동 502호 임대인입니다.

1. 23.3.에 임차인 아들이 전화가 와 나가겠다며 부동산에 내놓아 달라하여 무악부동산에 위 주소 주택 전세를 내놓았습니다.
2. 23.5. 임차인 아들이 전화가 와 임대인을 죄지은 사람처럼 트집 아닌 트집을 잡으면서 위협하여 일단은 전세가 나가든 안 나가든 더 이상 같이 갈 수 없어 전세가 안 나가면 대출이라도 받아 기한에 내보내려 은행에 문의하였습니다.(법원제출 강제4호증참조)
3. 그런데 전세 계약해야하니 계약금을 달라하더군요. 몰라서 처음엔 주어야 하는 줄 알아 “그러마” 했지만 부동산이고 은행에 문의하니 세입자가 먼저 나간다고 하면 사회통념상 계약금 안주는 거라 하면서 더구나 임대인이 집을 경매 날린다는 사람을 어찌 믿고 계약금을 내주려하느냐며 임차인이 다른 곳을 계약하고 그 계약서를 보여주면 주라하더군요. 그래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하더군요.
4. 그래서 위 내용을 문자로 보냈으나 돌아온 답변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답변이 와서 이의신청한 상태이고 현 상태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.
5. 전세계약 종료일에 은행에 대출을 부탁하여 돈을 준비하였으나 위와 같은 짓을 하였고 결국 나가지 않고 임차인 갑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
6. 결론은 임차인이 이사 갈 곳 계약서를 보내주면 언제든지 돈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.
7.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보내니 참조하여 주세요.(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일체)

임대인 유영화 올림